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1. 중간예납 신고 관련 주요 내용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1. 1. ~ 6. 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반기결산을 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작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2개월(8. 31. → 11. 2.) 연장되었습니다.

2.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반기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세율 인상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로 각각 1%p씩 인상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나. 과세표준 계산

• 중소기업이 2026년부터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속상각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28조의5, 조특령 제25조의5).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2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조특법 제104조의31).

• 일정 사업·지분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조특법 제38조의4, 조특령 제35조의6).

다. 세액감면 및 공제

•R&D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AI 학습데이터 구매비가 추가되었고(조특령 제9조 제3항·7항·별표6), 국가전략기술에 인공 지능 분야가 신설되는 등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기술 및 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벤처투자조합의 SPC 경우 투자와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의 세제지원은 확대되는 반면(조특법 제13조·13조의2, 조특령 제12조의2 제3항),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투자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조특법 제24조 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유지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되었고(조특법 제29조의8, 조특령 제26조의8),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 조특령 제26조의8 제3항).

•지방이전 기업은 감면기간 확대와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 해외진출기업의 부분복귀 세제지원도 국내 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특법 제63조·63조의2, 조특령 제60조·60조의2).

라. 기타사항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의무 비율은 투자포함형 70%에서 80%, 투자제외형 15%에서 30%로 상향되었고 현금배당이 환류대상에 추가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32, 조특령 제100조의32 제4항·5항·8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상 증여 범위에는 시가 차액이 30% 이상인 현저한 저가 이전이 포함되었고, 장외파생상품의 배당상당액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3조).

관련구성원

백제흠

대표변호사

02-316-4052

jhebaik@shinkim.com

이창희

고문

02-316-4164

cheelee@shinkim.com

이정렬

변호사

02-316-4597

jyeollee@shinkim.com